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등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684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 직권말소 근거 마련	4
2. 연료공급차량으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 해제 등 ...	8
3.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정량공급 의무 부과 등	13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 출 일 : 2024. 7. 12.
3. 회 부 일 : 2024. 7. 15.

II. 제안이유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업의 해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연료 공급량이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그 측정결과를 갖추도록 하여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하거나 신고하기 때문에 그 영업구역이 등록하거나 신고한 항만으로 제한되나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는 경우는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종이 지역별 선박연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및 제26조의3제8항 신설)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권으로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이나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업종 확대(안 제26조의3제6항)

항만운송관련사업은 원칙적으로 항만별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여 영업구역이 해당 항만으로 제한되나,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 업종에 선박연료공급업으로서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여 해당 차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업구역 제한의 예외인 항만운송관련사업 업종을 확대함.

다.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료 공급량 측정 의무 도입(안 제26조의3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1)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기로 정한 공급량보다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되거나 증가시켜 공급해서는 아니되도록 정량 공급 의무를 규정함.

2)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정량 공급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측정 결과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함.

- 3)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량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했는지 여부와 측정결과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함.

IV. 검토의견

1.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 직권말소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관리청이 직권으로 그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4항, 제26조의2 제4항 및 제26조의3제8항·제9항).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의 신청) ①·② (생략)	제5조(등록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항만운송사업자의 폐업 여부, 폐업일 및 폐업 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라 규율을 받는 업종과 그 세부유형을 보면, ①‘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으로서 항만하역사업, 검수·검정·검량사업을 의미하고,¹⁾ ②‘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의미함.²⁾

또한, ③‘항만종합서비스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과 항만운송사업 중 검수·검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업을 말함.³⁾

□ 그런데, 현행법은 항만운송사업 등(①+②+③)을 하려는 자가 폐업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신고

1)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3. 검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④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⑧ 이 법에서 “항만종합서비스업”이란 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및 화물 고정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과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수사업·검정사업 및 검량사업 중 1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업을 말한다.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관리청의 입장에서는 항만운송사업 등의 폐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관리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폐업에 따른 등록사항 말소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참고로, 폐업 시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로는 「농어촌정비법⁴⁾」, 「낙시 관리 및 육성법⁵⁾」 등이 있음.

4) 「**농어촌정비법**」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낙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 낙시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낙시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료공급차량으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 해제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등록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활용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제1항·제6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u>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해양수산부장관에게</u>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 ----- <u>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 ----- <u>관리청에</u> ----- -----.
<신설>	1. 항만용역업, 컨테이너수리업: <u>항만별로 구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려는 항만의 관리청</u>
<신설>	2.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u>항만별 구분 없이 해당 사업을 등록하려는 관리청</u>
② ~ ⑤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⑥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업으로서 제10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0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선박수리업 4. 선용품공급업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 항만운송관련 사업의 등록·신고·영업구역현황을 보면,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컨테이너수리업·선박수리업·선박연료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항만의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함(복수 항만 등록 가능).⁶⁾

반면, 선박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 구분 없이 하나의 관리청에 등록을 한 경우 영업구역 제한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6)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항만운송관련사업은 원칙적으로 항만별로 등록·신고하고, 영업구역이 해당 항만으로 제한됨.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영업구역 제한 없이 사업 수행이 가능함.⁷⁾

또한, 선박연료공급업 중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연료공급선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⁸⁾’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하나의 관리청에 등록하면 영업구역 제한 없이 사업 수행이 가능⁹⁾하지만, ‘연료공급차량’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업구역이 1개의 항만으로 제한되고 있음.

7)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⑥ 제1항에 따른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8) 「해운법」 제24조(사업의 등록) ①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기준) ①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과 선령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①법 제27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사업의 종류	구분	선박 보유량	자본금	경영태
내항 화물운송사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평수구역(平水區域) 또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구역 안의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 등으로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보유 선박 중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일 것. 다만, 유조선으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 유조선을 1척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9) 연료공급차량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항만용역업이나 컨테이너수리업과 마찬가지로 관리청을 달리하는 복수의 항만에 등록할 수 있음. 다만, 사업 등록시 사용하려는 장비(차량 등)의 목록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일한 차량을 복수의 항만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1개의 항만으로 영업구역이 제한되고 있음.

[항만운송관련사업 업종별 등록·신고 및 영업구역 현황]

업 종	등록·신고 대상	영업구역
항만용역업	사업을 수행하려는 항만의 관리청	해당 항만으로 제한 *단, 복수 항만에 각각 사업 등록하여 영업하는 것도 가능
컨테이너수리업	사업을 수행하려는 항만의 관리청	해당 항만으로 제한 *단, 복수 항만에 각각 사업 등록하여 영업하는 것도 가능
선박수리업	관리청	제한 없음
선박연료공급업		
연료공급선	관리청	제한 없음
연료공급차량	(현행) 사업을 수행하려는 항만의 관리청 → (개정안) 관리청	(현행) 해당 항만으로 제한 *복수 항만 영업 불가능 → (개정안) 제한 없음
선용품공급업	(현행) 해양수산부장관 → (개정안) 관리청	제한 없음

그런데 최근 LNG,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각 지역·항만별 연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연료공급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에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을 추가함으로써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별 선박연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등록·신고 대상 및 영업구역 제한 해제 업종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 관계기관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현재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이 아직 도입단계이므로 영업구역을 각 항만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 항만별로 충분한 수요 확보가 어려워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3.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정량공급 의무 부과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정량공급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비치 의무 등을 부과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 여부 및 측정결과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등을 부여하는 한편(안 제26조의3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및 제28조의2제1항제4호),

의무 위반시 등록 취소 및 벌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 제29조제2항제5호 및 제31조제1호의3).

현행	개정안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 ② (생략) <u><신설></u>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③ (생략)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신설>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청에-----
-----.

1. 항만용역업, 컨테이너수리업: 항만별로 구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려는 항만의 관리청

2.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항만별 구분 없이 해당 사업을 등록하려는 관리청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이하 “선박연료공급업자”라 한다)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

④·⑤ (현행과 같음)

⑦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으면 제10항의 등록 기준 또는 신고 기준에 적합

⑦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한지를 확인한 후 해당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⑩ -----

다만, 관리청은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하여는 이용자,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⑪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외국항행 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기로 정한 선박연료 공급량보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나 미달되거나 증가시켜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⑫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연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범위 이내로 공급(이하 “정량공급”이라 한다)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공급 장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⑬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제12항에 따른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로

<신 설>

<신 설>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측정한 측정결과 자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⑭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하여 정량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제12항에 따른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 여부 및 제13항에 따른 측정결과 자료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⑮ 제14항에 따른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

-- 제2호의2, 제3호 또는 제5호--

1. (현행과 같음)

1의2. -----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

을 변경한 경우

2.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 설>

3. ~ 5. (생략)

② (생략)

제28조의2(보고·검사)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장·사무실, 부선·예선 등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보유 장비 및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2. 제26조의3제10항-----

-

2의2. 제26조의3제13항에 따른 측정결과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측정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보고·검사)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측정결과 자료의 보관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표본조사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제2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u>추가하거나 그 밖에</u>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한 자 <u><신 설></u> 2.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4. (생 략)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1의2. ----- ----- ---- <u>추가 또는 변경하거나</u> ---- ----- 1의3.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u>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연료공급업을 한 자</u> 2.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먼저 선박연료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정유사와 선사가 계약하는 경우 ① 먼저 선사는 정유사에 급유를 요청하며 대금을 지급하고 → ② 정유사는 급유대리점에 급유를 지시하며 수수료를 지급하고 → ③ 급유대리점은 급유선 업체를 통해 각 선박에 선박연료를 운송·급유하며 운송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선박연료 유통구조 예시]

Seller	Supply					Buyer
정유사	위탁	급유대리점	지시	급유선 업체	공급	선사
	→		→	(선박연료공급업자)	→	

*자료: 해양수산부

선박연료 유통과정에서 ‘급유선 업체’가 위탁받은 선박연료를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일부만 선사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급유선에 잔류시킨 이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이른바 도유(盜油) 또는 불법유통이 만연한 상황으로,

정유사는 급유선 업체의 도유를 고려하여 정상 운송원가에서 예상되는 불법이익을 공제하고 운송료를 지급하고 있음.¹⁰⁾

그런데 급유선 업체는 급유대리점이 운송료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취득하여 실제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료를 지급받아 도유가 불

10) 해양수산부에서 설명한 내용을 발췌함.

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정유사는 지속된 도유 문제로 운송료 인상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유통구조의 불투명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급유선업체로 하여금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선박에 비치하게 하면 도유나 불법유통의 문제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다는 의견임.

이에 개정안은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 의무 및 측정결과 비치의무¹¹⁾ 등을 부과하고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 근거 및 등록취소¹²⁾·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선박연료공급업계에 만연한 도유 문제를 해결하고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조문체계상 현행법 제26조의3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영업구역 등에 관한 내용인 반면 안 제26조의3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는 선박연료의 정량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별도의 조를 통해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의 내용 중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11) 질량유량계를 통해 선박연료 공급 시 질량유량계 시스템에서 외부에서 조작할 수 없는 측정 결과지를 제공하는데 향후 정량공급 조사나 공급량 분쟁 등을 위한 증빙 자료로서 선박에 일정 기간 의무 보관 필요(참고 1, 사진자료)

1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측정결과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측정결과를 조작·고의로 훼손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측정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에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환경검사시험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질량유량계 등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와 제도변화에 따른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그 시행일을 공포 후 3년 뒤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관계기관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내용 중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질량유량계 등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부과하는 경우 해당 질량유량계의 설치·유지·보수 비용을 전적으로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예측되는데, 선박연료공급업체의 영업이익(평균 21억원)을 고려할 때 과도한 비용으로 보이지 않고 향후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¹³⁾

문 의 처

02)6788-5419

13) 질량유량계란 일정한 시간 동안 흐르는 유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기기로, 현재 통용되는 코리올리 질량유량계의 경우 유체가 유량계를 통과할 때 센서 튜브가 진동하고 튜브 양쪽에 전향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자기장으로 질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 1척당 질량유량계 2개 설치시 약 2억 5,000만원의 설치비용과 약 1,700만원의 연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선박연료공급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약 670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약 21억원임.

참고 1

질량유량계 및 미터링 티켓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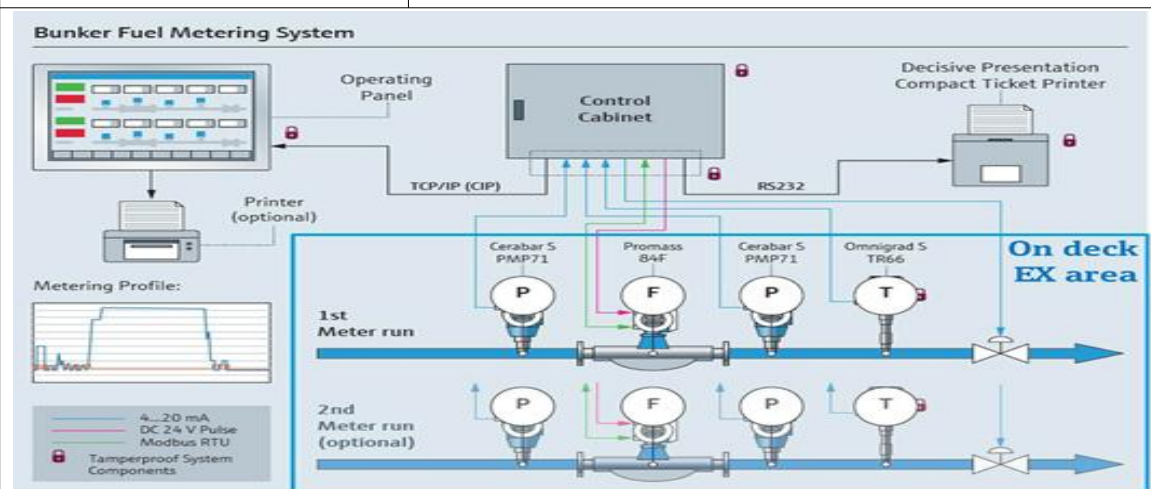
질량유량계-1



병커 미터링 티켓(BMT)



압력계 봉인



Bunker Metering System